

정보통신망 오남용 사고 주의 안내

정보통신처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침해사고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범죄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내외 인터넷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범죄란?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행위와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공간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총칭한다.

2. 사이버범죄의 분류

가. 사이버테러형 범죄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DOS) 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

- 1) 해킹 :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변경, 자료유출, 메일폭탄, 서비스거부(DOS) 공격
- 2) 바이러스 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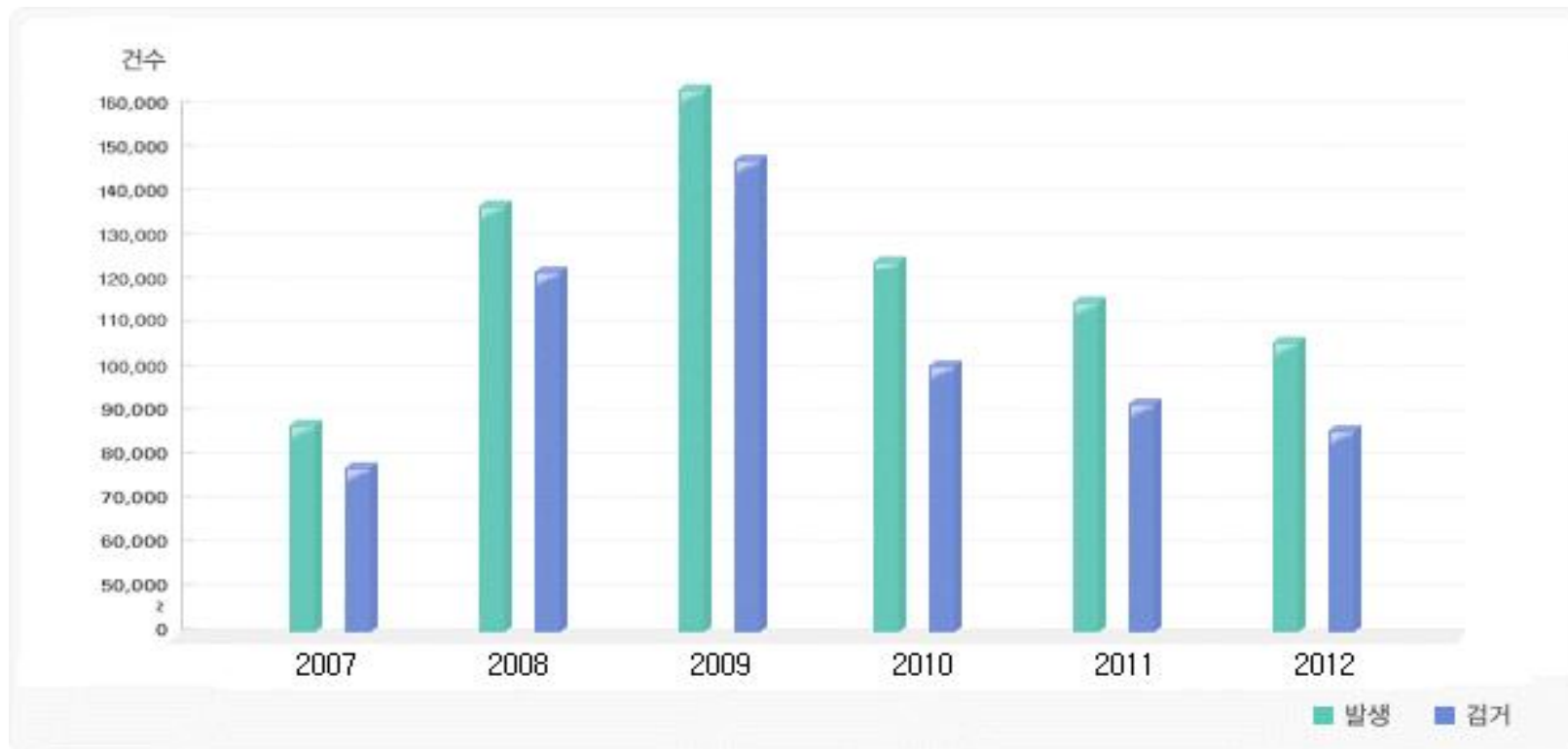
나. 일반사이버범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음란물 게시, 사이버도박, 사이버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

- 1) 사기 (통신, 게임)
- 2) 불법복제 (음란물, 프로그램)
- 3) 불법/유해사이트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 4) 명예훼손
- 5) 개인정보침해
- 6) 사이버스토킹/성폭력

7) 스팸메일발송

3. 사이버범죄 현황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4. 사이버범죄 유형 별 관련법규

가. 해킹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벌칙)

-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벌칙)

③제33조의제5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⑤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이러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벌칙)

-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다.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불법복제

1)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2.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

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

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불법/유해사이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개인정보침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아. 사이버스토킹/성폭력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스팸메일발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참고사이트

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물류정책기본법
- 4) 형법
- 5) 저작권법
- 6) 콘텐츠산업 진흥법
- 7) 통신비밀보호법
- 8) 주민등록법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